

1. 개정이유

공동집배송센터의 주요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일부 부대시설의 목적 외 과다설치 등을 방지 하여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동집배송센터 주요시설 중 분류·포장 및 가공시설에 제외되는 공장을 명확화

- 1) 제조 공장의 일부로 사용되는 분류·포장 및 가공시설이 주요시설에 해당된다고 오해석 하는 사례가 있어 시설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
- 2) ‘분류·포장 및 가공시설’에 해당되는 공장 단서에 제조 공장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을 제외하는 단서를 추가함

나. 공동집배송센터 집배송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오피스텔은 공동집배송센터 종사자 편의를 위해서만 설치토록 규정

- 1) 공동집배송센터의 부대시설로 설치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집배송 기능과 관련없이 과다 설치될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성 제기
- 2) 공동집배송센터 부대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대한 단서를 추가하여 오피스텔의 경우 종사자 위한 용도로만 설치하도록 개정

다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개정('24.9)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

- 1)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국가관여 최소화, 지방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일괄정비됨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 필요
- 2) 시·도지사 등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, 대규모점포 개설등록·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'보고'를 '통보'로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 제목 “(보고 등)”을 “(통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보고”를 각각 “통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고”를 각각 “통보”로 한다.

별표 6 제1호나목(1) 중 “시설”을 “시설 및 제조 공장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부대시설

별표 6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가. 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·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(1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, 제과점
- (2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 아목·자목·하목 및 너목에 따른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,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, 제조업소, 수리점 또는 이와 유사한 것

(3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

(4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 가목·나목 및 다목 1)에 따른 도매시장, 소매시장, 상점

(5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

(6)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

나. 가목 (5)에 따른 부대시설 중 오피스텔은 공동집배송센터 종사자의 편의 외의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운영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동집배송센터 시설기준 적용례) 공동집배송센터 시설기준 [별표6]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공동집배송센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[별표6]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보고 등)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·도지사에게 <u>보고</u>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<u>보고</u>하여야 한다. ②시·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·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과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<u>보고</u>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<u>보고</u>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25조(<u>통보</u>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보</u>-----. ----- ----- <u>통보</u>----- --. ②----- ----- ----- <u>통보</u>----- ----- ----- <u>통보</u>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<u><부칙 신설></u>	부 칙
	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공동집배송센터 시설기준 적용례) 공동집배송센터 시설기준 [별표6]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공동집배송센터 시설기준에 관한

	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[별표6]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시행규칙 [별표 6]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(제23조제1항 관련) 1. 주요시설 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배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그 연면적이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가. (생략) 나. 분류·포장 및 가공시설 (1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(제조에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) 또는 이와 유사한 것 (2) 분류·포장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다·라. (생략) 2. 부대시설 : <u>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·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가목	시행규칙 [별표 6]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(제23조제1항 관련) 1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분류·포장 및 가공시설 (1)----- -----<u>(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및 제조공장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을 제외한다)</u> 또는 이와 유사한 것 (2) (현행과 같음) 다·라. (현행과 같음) 2. 부대시설 가. <u>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·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(1). -----

및 나목에 따른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 가목· 나목·바목 및 사목에 따른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 중개업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 판사, 제조업소, 수리점, 세탁소 또는 이 와 유사한 것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 라목 에 따른 전시장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 가목· 나목 및 다목(1)에 따른 도매시장, 소매 시장, 상점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 나 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바.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 <신설>	-----,제과점 (2). ----- 아 -·자-·하----- 너----- 휴게음식점, 제 과점, 일반음식점, 금융업소, 사무소, 부 동산중개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 소, 출판사, 제조업소, 수리점 ----- ----- (3). (현행과 같음) (4). ----- -----1)----- ----- (5). (현행과 같음) (6). (현행과 같음) 나. 가목 (5)에 따른 부대시설 중 오피스텔 은 공동집배송센터 종사자의 편의 외의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운영될 수 없다
--	---